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2012. 7.

지 식 경 제 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I. 규제영향분석 대상

□ 대상 규제 : 신설 2건

규제 사무명	변경(신설) 규제내용
1. 사업독점권 침해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안 제12조의5 및 제54조의2)	○ 제2조의 사업의 독점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의5) ○ 사업독점권 침해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및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54조의2)
2. 서신송달업자 관리 (안 제45조의3 ~ 제45조의7)	○ 서신송달업자에게 제2조의2에 따라 신고한 사업계획서를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서신송달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업개선명령 조항 신설(안 제45조의3) ○ 제2조의2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신고한 자가 타인에게 사업을 경영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45조의4) ○ 시행규칙(제2조의3제5항)의 서신송달업 휴·폐업에 대한 신고 규정을 재개업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안 제45조의5) ○ 우편법을 위반한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5조의6) ○ 서신송달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우편종사자에게 적용하는 비밀누설의 죄, 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등을 서신송달업자 및 서신송달업 종사자에게 준용하도록 함(안 제45조의7)

II. 규제영향분석 세부내역

1 사업독점권 침해 조사 및 과태료 부과

1 규제 신설 내용(안 제12조의5 및 제54조의2)

- (안 제12조의5) 사업독점권 침해 조사
 -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의 독점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안 제54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안 제12조의5 신설에 따라 사업독점권 침해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한 경우와 사업의 독점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5(사업독점권 침해 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 사업자,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조사 2. 개인, 사업자, 사업자 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대한 서신송

	달과 서신의 송달위탁 관련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 등의 제출 및 영치 3.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청취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를 고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4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4조의2(과태료) ① ----- ----- -----.

1. ~ 2. (생략)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3.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잃어버린 자 <신설>	3. 제12조의5의 사업독점권 침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 ----- <삭제> 1. ----- 2. ----- ③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는 그 서신을 우정관서에 접수한 경우의 우편요금으로 계산한 금액의 2배 이상 2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 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 사업독점권 침해 조사 및 과태료 부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 우편사업단장 홍만표, 우편정책과장 김윤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일반국민	생략		- 관계기관 협의(7~9월) - 입법예고(7~8월) - 전자공청회(7~8월)		-			
	이해 관계자	서신송달 업자	397개사		- 관계기관 협의(7~9월) - 입법예고(7~8월) - 전자공청회(7~8월)		-			
5. 규제존속기한	○ 계속 존속 - 우편시장의 개방과 서신송달업자의 사업참여에 따라 사업 독점권 침해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속 존속 필요									
6. 신설규제의 내용	○ (안 제12조의5) 사업독점권 침해 조사 - 사업독점권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4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 사업독점권 침해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한 자와 사업의 독점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7. 규제체계도	우정사업본부장 사업독점권 침해 ↕ 사업독점권 침해 조사,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 서신송달업자, 서신송달 위탁자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던 서신 송달을 민간시장에 일부 개방하여 신고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우편법을 개정하여 시행('12.3.15.)
 -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을 서신에서 제외함(제1조의2제7호)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을 제외하고 중량이 350 그램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기본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항)
- ☐ 우편시장 개방에 따른 서신독점권의 축소, 민간 송달업자의 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독점권 침해 확대 등으로 인한 우편매출액 감소로 보편적 우편서비스 기반 약화 우려
 - 우편매출 감소 예상 : '11년 통상우편 매출액(1조6,844억원) 기준으로 약 18.2%(3,056억원)가 민간에 개방
 - 서신송달업자 신고현황('12.6월말) : 총 325개(본사 28개, 지사 297개)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 ☐ 우편사업의 기반과 사업독점권 강화를 통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법·제도 준수가 필수

-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던 서신에 대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편시장을 일부 개방함에 따라 우편시장에 진출한 서신송달업자와 서신 송달을 민간에 위탁한 자에 대한 우편독점권 침해 방지와 사업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준수 장치 마련

* 사업독점 위반 적발현황(최근 3년간) : 1,218건('09년), 1,000건('10년), 2,142건('11년)

- ☐ 국내 다수의 유사입법 사례에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 및 기준을 규정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사업법」, 「공직선거법」 등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의 대체수단 : 없음

- 우편법에서 사업독점권 확보를 통한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 우편시장의 질서 유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독점권 침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신설
- 유사입법례를 참조하여 법률에 사업독점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 분석

- 사업독점권 침해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과태료 부과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시행 가능한 업무로 별도 비용이 불필요함

□ 편익 분석

- 사업독점권 침해를 예방하고, 서신송달업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 기반 조성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사업독점에 대한 위반행위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그와 관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은 국내 유사 입법사례와 비교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

- 사업독점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안 제12조의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정경쟁 행위 등의 조사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등 다수의 입법사례와 유사
- 사업독점권 침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54조의2제1항제3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과태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등 다수의 입법사례와 유사
- 사업의 독점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에게 우편요금으로 계산한 금액의 2배 이상 2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 부과(안 제54조의2제3항)
 -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등과 유사

3-2. 이해관계자 협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평가

- 전 부처 의견조회 : '12.7.9. ~ 7.20. 11일간
-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평가 실시

□ 이해관계자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관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입법예고 : '12.7.13. ~ 8.22. 40일간
-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개최 : '12.7.13. ~ 8.22. 40일간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동 규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기술적·행정적인 장애사항이 없으므로 집행의 실효성 확보 가능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제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제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 사항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⑨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9조의2(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 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

- 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2.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3.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제2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삭제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0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6.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자
 7.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9.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중량·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5.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제23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3. ~ 5. 삭제
 6.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2

서신송달업자 관리

① 규제 신설 내용(안 제45조의3 ~ 제454조의7)

- (안 제45조의3) 사업개선명령
 - 서신송달업자에게 제2조의2에 따라 신고한 사업계획서를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서신송달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업개선명령 조항 신설
- (안 제45조의4) 사업권대여의 금지
 - 제2조의2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신고한 자가 타인에게 사업을 경영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
- (안 제45조의5) 휴·폐업의 신고
 - 시행규칙 제2조의3제5항의 서신송달업 휴·폐업에 대한 신고 규정을 재개업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
- (안 제45조의6) 영업소 폐쇄 등
 - 서신송달업자의 관리체계 구축과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을 위반한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5조의7) 준용규정
 - 서신송달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우편종사자에게 적용하는 비밀 누설의 죄, 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등을 서신송달업자 및 서신송달업 종사자에게 준용하도록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5조의3(사업개선명령) 지식경제 부장관은 서신송달업서비스의 개 선 및 서신송달업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서신송달업자에게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의4(사업권대여의 금지) 서신 송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 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 달업을 경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 다.
<신 설>	제45조의5(휴·폐업의 신고) 서신송 달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 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의6(영업소 폐쇄 등) ① 지식 경제부장관은 서신송달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 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2조제3항의 중량 및 요금 기 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한 경우 3. 사업신고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은 경우 4. 신고한 사항의 변경 내용을 신 고하지 않은 경우 5.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 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개선명 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45조의4의 사업권대여 금지 를 위반한 경우 8. 제45조의5의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 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7(준용규정) 제3조, 제48조, 제51조, 제51조의2는 서신송달업 자 및 서신송달업 종사자에게 이 를 준용한다.

②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 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신송달업자 관리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 우편사업단장 홍만표, 우편정책과장 김윤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서신송달 업자	397개사		- 관계기관 협의(7~9월) - 입법예고(7~8월) - 전자공청회(7~8월)		-			
	이해 관계자	서신송달 업자	397개사		- 관계기관 협의(7~9월) - 입법예고(7~8월) - 전자공청회(7~8월)		-			
5. 규제존속기한	○ 계속 존속 - 서신송달업자의 효율적 관리와 우편시장 질서유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계속 존속 필요									
6. 신설규제의 내용	○ (안 제45조의3) 사업개선명령 -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음 ○ (안 제45조의4) 사업권대여의 금지									

	- 서신송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해서는 아니됨 ○ (안 제45조의5) 휴·폐업의 신고 - 서신송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함 ○ (안 제45조의6) 영업소 폐쇄 등 - 서신송달업자가 주요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안 제45조의7) 준용규정 - 우편종사자에게 적용하는 비밀누설의 죄, 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등을 서신송달업자 및 서신송달업 종사자에게 준용하도록 함
7. 규제체계도	우정사업본부장 ① 사업계획 준수, 서비스 수준 유지 ② 사업권대여 금지 ③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④ 비밀누설, 서신개봉 훼손 등 ↑ ↓ ① 위반시 사업개선 명령 ② 위반시 영업 정지 및 폐쇄 ③ 휴업 미신고시 영업 정지 및 폐쇄 ④ 해당 벌칙 적용 서신송달업자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던 서신 송달을 민간시장에 일부 개방하여 신고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우편법을 개정하여 시행('12.3.15.)
-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을 서신에서 제외함(제1조의2제7호)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을 제외하고 중량이 350 그램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기본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항)
-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2조의2)
- ☐ 민간 송달업자의 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독점권 침해 방지 및 우편시장 질서유지를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중요
- 서신송달업자 신고현황('12.6월말) : 총 325개(본사 28개, 지사 297개)
- 사업독점 위반 적발현황(최근 3년간) : 1,218건('09년), 1,000건('10년), 2,142건('11년)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 ☐ 우편사업의 기반과 사업독점권 강화를 통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법·제도 준수가 필수

-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던 서신에 대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편시장을 일부 개방함에 따라 우편시장에 진출한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준수 장치 마련

- ☐ 국내 다수의 유사입법 사례에서도 사업개선명령, 사업권대여의 금지, 영업 폐쇄 등 신고 및 허가된 사업자에 대한 관리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 「항공법」, 「해운법」, 「도시철도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궤도운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 규제외 대체수단 : 없음

- 우편시장의 질서 유지 및 서비스 품질 유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서신송달업자 관리 조항을 신설
- 유사입법례를 참조하여 법률에 서신송달업자 관리 조항을 신설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 비용 분석

-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시행 가능한 업무로 별도 비용이 불필요함

□ 편의 분석

- 서신송달업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 기반 조성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위법행위를 제재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사업권 대여의 금지, 영업정지·폐쇄 등을 규정하고, 이용자(국민)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조항을 준용한 사항은 국내 유사 입법사례와 비교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

3-2. 이해관계자 협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평가
 - 전 부처 의견조회 : '12.7.9. ~ 7.20. 11일간
 -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평가 실시
- 이해관계자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관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입법예고 : '12.7.13. ~ 8.22. 40일간
 -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개최 : '12.7.13. ~ 8.22. 40일간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동 규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기술적·행정적인 장애사항이 없으므로 집행의 실효성 확보 가능

붙임1

사업송달업자 관리 관련 유사 입법사례

1. 사업개선명령

가. 항공법

제122조(사업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운송서비스의 개선 및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
3.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4.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5.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해운법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이나 요금의 변경
3. 시설의 개선이나 변경
4. 보험 가입
5.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
7. 선박의 개량·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
8.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의 준수

다. 도시철도법

제16조(사업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건설자나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운송약관의 변경
2. 운임의 조정
3. 도시철도차량이나 그 밖의 시설의 개선
4. 운행 시간, 운행 횟수 등 운행계획의 변경
5. 도시철도노선의 연결운행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2. 사업권대여의 금지

가. 항공법

제123조(면허대여 등의 금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8조(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휴폐업의 신고

가. 항공법

제127조(휴업·휴지)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국제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노선을 운항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휴업(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노선의 휴지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지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업 또는 휴지 예정기간에 항공편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휴업 또는 휴지로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나. 해운법

제18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 중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7조(휴업 등의 신고)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재개업(再開業)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 궤도운송법

제11조(휴지 또는 폐지)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휴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궤도시설의 파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지 또는 폐지하게 된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정거장, 영업소,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영업소 폐쇄 등

가. 항공법

제129조(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1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제112조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4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금 및 운임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9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2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7. 제121조를 위반하여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2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23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
10.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11.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합병한 경우
 12. 제1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3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면허 등의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나. 해운법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해당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여객선 중 일부 여객선에 대한 항만 입·출항정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여객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후 선박의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

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도시철도법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합병한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휴업(休業)하거나 휴업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도시철도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한 경우
6. 제4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7.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한 경우
8.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조의 사업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18조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

1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1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사용내구연한(使用耐久年限)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한 경우
 13. 제24조제2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4. 제25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라. 전기공사업법

-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 나.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5.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5. 준용규정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실적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제26조,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7(준용규정)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8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8(「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는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조 제3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다. 전기사업법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9조(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① 도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선의 승객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선사업자"는 "도선사업자"로, "유선"은 "도선"으로 보며, 제13조제2항제3호 중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은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선"으로 본다.